

<p>17.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議案番號：1234)(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43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7項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p> <p>都市整備委員會 李載鎬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李載鎬議員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李載鎬議員입니다.</p> <p>本議員이 議長님과 여러 同僚議員 앞에서 이번 第76回 臨時會 期間 中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p> <p>今番 市長이 提出한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의 主要內容은, 서울시가 95年度 市有財産 管理計劃을 執行함에 있어 都市計劃事業인 住宅改良再開發事業 施行과 關聯하여 事業區域內 市有地를 住宅改良再開發事業 施行者 및 占有者에게 適期에 賣却함으로써 事業이  원활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하고, 再開發事業 施行에 따라 建立된 再開發 貨賃住宅을 買入하여 區域內 買入者에게 賃貸하여 줌으로써 低所得市民의 住居環境의 安정을 기하고, 福祉向上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內容입니다.</p> <p>이번에 管理計劃의 同意를 받고자 하는 財産의 內容은, 먼저 取得財産으로는 買入者를 위한 賃貸住宅 2,326家口分과 國·公有地 無償讓與分 59筆地 7萬 6,339㎡로써, 無償讓與對象 國·公有地는 住宅改良促進에 관한臨時措置法 第5條 規定에 의거, 事業區域內 國·公有地를 市所有 土地로 取得하고자 하는 것입니다.</p> <p>다음, 처분할 財産으로는 市有地는 事業을 施行하는 14個 區域에 2,377筆地로 37萬 9㎡이며, 公共事業을 위하여 再開發事業 施行者에게 無償讓渡하는 財産은 5筆地의 市有地로써 2,044㎡입니다.</p>	<p>이상 市長이 提出한 公有財産管理計劃에 대한 內容을 審査한바, 管理計劃이 地方財政法 第77條 및 서울시公有財産管理條例 第37條第1項에 정한 事業目的과 節次가 適法하고 그 目的도 타당하다고 보아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는 市長이 提出한 同意案대로 同意하기로 審査하였습니다.</p> <p>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95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을 同意하여 줌으로써 再開發事業이  원활하게 遂行될 수 있도록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同意 議決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p> <p>具體的 管理計劃은 配付하여 드린 同意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그러면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p> <p>'95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사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내 세입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며, 주택개량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무상양여 대상 국공유지를 서울특별시 토지로 취득하여 재개발 사업 재원을 확충코자 함을 주내용으로 하는 '95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p>
--	---

<p>○'95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산<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세입자용 임대주택 매입 4개 구역 토지·건물 2,326가구</li><li>-국·공유지 무상양여(토지) 4개 구역 59필지 76,339㎡</li></ul></li><li>· 처분<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유지매각(토지) 14개 구역 2,377필지 370,009㎡</li><li>-시유지 무상양도 1개 구역 5필지 2,044㎡</li></ul></li></ul>	<p>(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95 시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 '95시 유재산관리계획 취득내용

구 분	구역수	가구수	금액(천원)	재 산 내 역	비 고
취 득	4	2,326	84,685,000	• 동소문 구역 215가구 3,249,000천원	성 북 구
一 재 개 발 구역 내				• 학계2 구역 864가구 30,240,000천원	노 원 구
세 입 자 용 재				• 신정6-1 구역 1,104가구 48,000,000천원	양 천 구
개 발 임 대 주 택				• 오금2 구역 143가구 3,196,000천원	송 파 구
매 입		계		4개 구역 2,326가구 84,685,000천원	

구 분	구역수	면적(m)	금액(천원)	재 산 내 역	비 고
취 득	4	76,339	57,443,126	• 둔암3-2 구역 8필지 9,231㎡ 7,569,666천원	성 북 구
一 주 택 개 량 축 진				• 둔암3-3 구역 3필지 2,604㎡ 2,135,280천원	성 북 구
에 관 한 임 시 조				• 홍계3 구역 3필지 87㎡ 69,600천원	서 대 문 구
치 범 제5조에				• 봉천3 구역 45필지 64,417㎡ 47,668,580천원	관 아 구
의 거 무 상 양 여					
된 국 공 유 지					
소 유 권 이 전		계		4개 구역 59필지 76,339㎡ 57,443,126천원	

○'95시유채산관리계획 매각내용						
구	분	구역수	면적(㎡)	금액(천원)	재 산 내	비 고
매	각	14	370,009	273,868,518	220필지	성
					• 돈암3-2구역	노
					• 상계3-1구역	노
					• 상계3-2구역	마
					• 도화2 구역	마
					• 도화4 구역	마
					• 창전 구역	마
					• 홍계3 구역	서
					• 홍계4 구역	서
					• 현저4 구역	서
					• 신월 정착지	양
					• 신림2-1구역	관
					• 봉천7-1구역	관
					• 봉천2-2구역	관
					• 봉천3 구역	관
			계		14개 구역 2,377필지 370,009㎡	
○'95시유채산관리계획 무상양도 내용						
구	분	구역수	면적(㎡)	금액(천원)	재 산 내	비 고
무상	양도	1	2,044	1,534,898	5필지	성
					• 돈암3-2구역	노
						마
						마
						마
						마
			계		1개 구역 5필지 2,044㎡	

공 유 재 산 판 리 계 획  
'95관리계획총괄표(6-1)

(단위: 가구, m, 천원)

구	분	상 받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토 건 기	지	4	76,339	57,443,126			4	76,339	57,443,126
		물	4	2,326	84,685,000			4	2,326	84,685,000
		타								
투	토 건 기	지	4	2,326	84,685,000			4	2,326	84,685,000
		물								
		타								
3. 기	타	지	4	76,339	57,443,126			4	76,339	57,443,126
		물								
		타								
4. 매	토 건 기	지	12	366,442	270,353,516	3	5,611	15	372,053	275,403,416
		물								
		타								
5. 양	토 건 기	지	11	364,398	268,818,618	3	5,611	14	370,009	273,868,518
		물								
		타								
6. 교 환 으 로 처 분	토 건 기	지	1	2,044	1,534,898			1	2,044	1,534,898
		물								
		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 건 기	계								
		지								
		물								
		타								

(取得對象·賣却對象 財産日録은 關聯部署 保管日録 參照)